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7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공연장과 성격을 같이하는 '옥상공간'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연장 이용료 산정규정에 포함하며,
- 공연장 중 타 조례로 정하거나, 현재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와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본 조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별표 2 종별에 '옥상공간'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'공연장' 이용료 산정규정에 포함하도록 함.
- 안 별표 2 '공연장' 중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나, 현재 사용수익허가된 경우, 그리고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본 조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.
- 안 별표 '강의실'은  $1m^2$  당 200~300원, '공연장'은  $1m^2$ 당 100~200원으로 사용기준 면적을 변경하도록 함.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공통의 강의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
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안 별표 2 공통의 공연장(복합문화공간 포함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연장 (복합문 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안 별표 2 공통의 옥상공간란을 삭제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수 정 안			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
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/ul>	강의실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개정안과 같음>
<신 설>			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00㎡당, 1시간당	10,000~ 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/ul>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<신 설>				옥상공간	100㎡당, 1시간당	15,000~ 2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/ul>	<삭 제>			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공통의 “강의실 대여료”를 “강의실”로 하고, 강의실(중전의 강의실 대여료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
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별표 2 공통의 강의실(중전의 강의실 대여료)란 다음에 공연장(복합문화공간 포함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액(원)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의실 대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~ 30,0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&lt;신 설&gt;</p>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/ul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액(원)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의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~3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~2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
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</li> <li>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</li> <li>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</li> <li>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</li> <li>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</li> <li>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</li> <li>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</li> <li>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</li> <li>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